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473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473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1888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소인A

변론 종결 2022. 12. 7.

판결 선고 2023. 2. 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1888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7.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4,756,5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4,756,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원물반환 청구를 가액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하1행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 9. 6.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신보)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에 따라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B이 연대보증 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신규·증액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보증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지도에 법령과 같은 강제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바로 B이 한 연대보증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12행 '할 것이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8. 8.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약서는 2020. 8. 18.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2018. 8.경 이루어진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2.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방법

1) 가액배상의 원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D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38,000,000원(2021. 8. 31. 기준 실제 피담보채무액 98,595,571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21. 8.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피고는 2021. 7. 26. 제3자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금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2021.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300,000,000원에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98,595,571원을 공제한 잔액 201,404,429원 중 B의 2/9지분에 해당하는 44,756,539원(이 사건 피보전채권 범위 내)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8. 7. 25.자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4,756,5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4,756,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우종

판사강태규

판사주문식

별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일자 2020. 8. 18.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일자가 2018. 7. 25.이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를
특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현한다.